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5035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03-24]

dawa09@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3-24]

히바치텐

정 보 공 개 서

【디테일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디테일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의 소재지] 전남 순천시 장천2길 30-23, 4층 4030호(장천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61-723-0808 [대표팩스번호]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관리팀 061-723-080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직영점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시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디테일 컴퍼니	히바치텐	전남 순천시 장천2길 30-23, 4층 4030호(장천동)			
	사업 형태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 사업자	2025.02.24	김 승자	061)723-0808	-
	사업자등록번호	332-23-0215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 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 표	디테일 컴퍼니	히바치텐 (1개)	전남 순천시 장천2길 30-23, 4층 4030호(장천동)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김 승자	061)723-0808	-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자 나 회사를 말합니다.

3. (최근 3년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 칭	히바치텐	
상 호	히바치텐 OO점	
상표(서비스표)		
광 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466,425	-	-
2023년	-	-	-	541,745	-	-
2024년	-	-	-	381,442	-	-

※ 상기 매출액은 직영점 매출이며 직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당사의 직영점 매출액이며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 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 당 업 무
관련임원	김 승자	대 표	2023.09.18~현재	대표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 12월 31일	1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당사항 없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히바치텐 가맹사업 현황

1. 히바치텐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예 정

“당사는 히바치텐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9년 02월 18일)

2. 히바치텐 연혁

가맹본부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디테일컴퍼니	히바치텐	김 승자	예 정	전남 순천시 장천2길 30-23 4층 4030호(장천동)

3. 히바치텐 업종

영업표지	업 종	
히바치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 식	소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4.12.31.			2023.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1	-	1	1	-	1	1	-	1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히바치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시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해당없음	해당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히바치텐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동순천지점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78-2	061) 722-61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농협은행 계좌 있는 사업자		① 가맹계약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은행 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농협은행 계좌 없는 사업자		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 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 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농협은행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후 농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인터넷뱅킹 로그인 (www.banking.nonghyup.com) - 기업 - 기업서비스 - 가맹금예치제도”를 접속하여 가맹금예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예치금의 반환승인, 지급승인, 지급보류 등록 및 해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직접 등록 하셔야 하며, 영업점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별도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Commission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히바치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과 동시	가맹점 오픈이후 불가 단,오픈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 비용	
교육비	5,500	계약 체결 과 동시	교육이후 불가 단,오픈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점주의 1인 (2인기준) 1인추가시 50만원추가

※ 상기의 가맹비는 최초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는 대가와 자료제공의 대가, 인력지원의 대가 등 기타 개업지원 대가입니다.

산정된 가맹비,교육비는 본사의 가맹사업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총계	8,800				
양수가맹비	3,300	계약 체결 과 동시	가맹점 오픈이후 불가 단, 오픈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해 소요된 소멸성 비용	
교육비	5,500	계약 체결 과 동시	교육이후 불가 단, 오픈전 해약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점주의 1인 (2인기준) 1인추가시 50만원추가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 과 동시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 없음)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신규 가입자	기존가맹점 양수자
합계	16,000	13,800
가입비	5,500	3,300
교육비	5,500	5,5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부가가치세 없음)	5,000 (부가가치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포함/99㎡기준)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 계		118,300				홀 매장기준
내부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및 탁자포함)	협력업체 (미지정) 또는 가맹점사업자 가 지정한 업체	82,500	2,750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즉시	공사 전 계약취소	99㎡(30평) 기준
외부공사		실측 후 산정				유동적
간판/사인물	협력업체 (미지정)	5,500	183	물품공급 3일전	공사 전 계약취소	※유니폼/홍보물 포 함
주방기기/집기		22,000	733	물품공급 3일전	협력업체 주문 전	유동적
가구(의자)		1,100	36			
POS/CCTV		2,200	-			CCTV기본4채널
초도물품		5,000	167	공급 1일전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인테리어 비용은 99㎡기준이며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간판 및 사인물 비용은 간판의 크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상하수도 및 수도개설공사, 어닝, 외장공사, 내부다트시설,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귀하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측, 설계 및 도면작성에 대한 비용으로 일금 삼백만원(W3,000,000원 / VAT별도), 검수비(정보제공과 검수에 대한 비용)으로 3.3㎡당 일금 일십만원(W100,000원 /VAT별도)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경비(실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내	삼백만원(W3,000,000)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이내	오백만원(W5,000,000)
계약 체결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일천만원(W10,000,00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과약 →담당자 배정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 의뢰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가맹희망자가 최종결정)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할수 있으며 귀하의 책임과 권한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선정하는 바, 당사는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가맹점 경영능력이나 상권 및 영업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가맹점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등 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것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품목의 공급방법은 계약 체결시에 개별적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9) 금전지급 방법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광고 및 판촉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상표사용료 로알티	가맹본부	매출기준 : 정액제 3천만이하:33만원 3천만이상:44만원	매월 1일		시 행	CMS 신청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측이 배분하여 분담	통지받은후 10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 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통지받은후 10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 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청구	교육 실시 10일 이전	미 시행시 반환	시 행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 참조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 참조
POS 사용료	지정업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에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상품 및 재고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및 재고상품의 보관상태 등 점검	수 시	문의 : 가맹관리팀
접객 및 교육상태	직원 복장 및 고객응대방법	수 시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실시	수 시	
기 타	종업원 코치상담, 마케팅 및 서비스운영체계 컨설팅 공동 매뉴얼 운영 관리	수 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
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는 본 계약의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개월 전 사전 서면
통지 후,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는 당사로부터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제공 할 것입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귀하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VII.1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및 영업양수인의 가맹계약체결을 위한 숙고기간, 교육기간 감안)

당사의 사전승인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사전승인없이 양도가 이뤄질 경우 당사는 귀하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가맹금(가맹비,교육비,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영업양수인과의 완전한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6.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특히 웹페이지, 블로그, 지역정보, SNS 등 웹공간에서의 사용도 포함한 일체)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운영매뉴얼,조리매뉴얼)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에 속하는 모든 간판, 공작물, 점포 내·외장을 제거하고 가맹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히바치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형태, 점포시설, 외관 등을 가지고 영업하거나 당사 가맹점과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종료 이후에는 당사에 지급할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모든 금전채무의 지급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계약종료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히바치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POS사용에 관하여 지정업체에게 매입 또는 임차를 할수 있으며 임차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기간 및 금액은 협의할수 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해당 사항 없음			당사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 칭	관 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 고
해당 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사항 없음					2024년 기준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사항 없음						2024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 날부터 2개월 후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동종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 3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요구 날부터 2개월 후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귀하는 당사의 권장에 따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합니다. 단, 귀하가 당사에서 권장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귀하가 결정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문서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홈페이지 또는 공문 참조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즉석 양념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히바치텐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일반상권 경우	가맹점 소재지를 기준 반경 1km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계약서 표시
대형변화가 경우	당사의 영업지역 구분안을 토대로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	
특수상권 경우	가맹점 소재지가 있는 건물을 영업지역으로 선정	

※ “대형변화가”라 함은 홍대, 신촌, 종로, 강남등 유사한 유동인구 및 집객시설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변화가 및 역세권을 의미합니다.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대학, 터미널,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된 상권을 의미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의 하자,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등 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

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당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유통업체명	주 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온라인의 배달 플랫폼 배달지역 선정에 관하여 인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반경 1km)이내에는 “깃발과 직접적인 오프라인 영업행위(전단지)”를 금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10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히바치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40 조 제 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히바치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 · 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41조 제1항
○ 당사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이 출입조사하는 것을 미허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영업상 비밀보호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 위치변경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하며 가맹점과 가맹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취급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 규칙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하거나 타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체납으로 주요 재산에 압류, 경·공매신청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광고, 판촉비 등이 대금지급을 연체하여 물류이행보증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거부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신규/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 제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 가맹사업법 개정 또는 요식업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영업지역의 설정 또는 조정(변경) 및 광고비 등 당사자간의 비율 산정방법과 납부시기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30일 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기간의 연장으로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비 (₩5,500,000) 필수의무교육 발생시 실비
대리행사	불 가	-	-	-
업무위탁	불 가	-	-	-

※가맹점운영권 관련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관련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며, 영업중에는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사전 승인없이 귀하가 히바치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정책 기타 사정으로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회사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즉석양념구이를 직접 또는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또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관리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히바치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7:00~24:00(7시간) 또는 승인후 자율시간	월 25일 이상	문의 : 가맹관리팀

※점포예정지의 상권 및 입지조건, 거주/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영업시간은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으며, 배달 및 포장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상 불가할 경우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귀하는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관리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으며,
가맹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영업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가맹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원·부재료관리, 고객관리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 시	가맹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필요 시	가맹관리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 시	가맹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히바치텐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과반수 동의) → 광고시행 → 광고비 지출내역 공개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가맹점 개별광고	없음	전액부담	-	-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경품제공 이벤트	기획비용 100%	판촉물 구입비용 100%		

전국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은 당사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당사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전구단위 및 지역 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으며, 활동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의 소재, 매체, 횟수, 시행일자 등 세부 내용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 포함한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가맹점사장 과반수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전 항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하고, 당사는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및 절차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며, 귀하가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맹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를 부담하는 광고에 대하여 해당 지역 가맹점 사장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비를 부담합니다.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 실시하기 20일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귀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 포함)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당사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전구단위 및 지역 단위로 경품제공, 이벤트 등과 같이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귀하를 포함한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가맹점사장 30%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전 항의 세부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하고, 당사는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 방법 및 절차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며, 귀하가 광고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가맹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판촉비를 분담하고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찬성하는 판촉활동 시행에 반대하거나 광고비 분담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당사의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불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광고 및 판촉 실시하기 20일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귀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행사 (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 포함)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하여 당사에 사전 제출후 동의를 꼭 얻어야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사유		비고
1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당사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금이천만원(₩20,000,000)을 위약금을 지급하여,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갖는다	가맹계약서 제41조 제6항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 29조 제1항(원·부재료 등의 필수품목 공급)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별로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1항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44조 제1항(비밀유지)와 제44조 제3항(경업금지)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계약서 제 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의 상호,간판,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반일로부터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3항
5	제 3항 내지 제 4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43조 제4항
6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47조 제3항
7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 체결후 (둘중 빠른 시점)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지불하여야한다. 1)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이내 경우 삼백만원(₩3,000,000) 2)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이내 경우 오백만원(₩5,000,000) 3)계약 체결후 1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경우 일천만원(₩10,000,000)	가맹계약서 제43조 제5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6 ~ 5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4 ~ 4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0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3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7 ~ 3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4 ~ 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상품에 따른 마케팅방법 등경영지도 2.해당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 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관리 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3.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 부담 (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히바치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로열티 면제	로열티 면제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승인일~3개월	로열티 면제	요청시 내부 결정
광고비 면제	광고비 면제	신규점 개점시	개점일~3개월	광고비 면제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히바치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교육공간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교육은 교육성과를 위해 가맹점사업자 매장에서 개업전에 교육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회사 및 브랜드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고객응대 등	실습교육	개점 10일전	필수 교육
양수 교육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정기교육	가맹점 운영정책의 변경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고객서비스 개선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필요시	필수 교육
특별 교육	신메뉴 가공	실습교육	필요시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히바치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0시간(5시간*10일/50H)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양수 교육	50시간(5시간*10일/50H)	5,500	최초 인수시 이수
정기 교육	필요시	실비책정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필요시	실비책정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신규/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가맹계약서 제31조 제1항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 40조 제1항 (계약의 갱신과 거절)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전남	히바치텐	전남 순천시 장천2길 30-23, 4층 4030호(장천동)

상기 직영점은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81,442	당사의 직영점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하였습니다.

별첨

- | | |
|--------------------------------|------|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1 |
| 2. 필수품목 현황 (강제 및 권장) | 별첨-2 |
| 3. 필수 설비/집기 리스트 | 별첨-3 |
| 4. 상품판매 리스트 | 별첨-4 |
| 5.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직영점 현황 | 별첨-5 |
| 6. 가맹금 예치신청서 | 별첨-6 |
| 7.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별첨-7 |



별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별첨-4. 상품 판매리스트

구 분	상품명	권장가격(단위:원)	비고
주 메 뉴	와규 살치살	29,000	
	와규 안창살	29,000	
	와규 갈비살	27,000	
	닭목살	13,000	
	닭모듬	39,000	
	닭어깨살	14,000	
	키조개 관자	12,000	
부 메 뉴	새우튀김	18,000	
	고로케&멘보샤	15,000	
	모듬튀김	25,000	
	백짬뽕탕	28,000	
	오뎅나베	18,000	
	차돌숙주볶음	18,000	
	마제소바	9,000	
	메밀소바	8,000	
	새우튀김우동	8,000	
	후리가케주먹밥	4,000	
	타코와사비	12,000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음

